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-6조에 제19호의2부터 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의2. “부동산채무보증비율”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(%)로 표시한 수치로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
가.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%

나.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%

19의3.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

나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
다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

라.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

19의4. 사회기반시설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.

제3-14조제1항제4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-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.

제3-22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절(제3-24조의5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 부동산채무보증한도

제3-24조의5(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) ①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-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(제3-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동산채무보증한도에 대한 경과조치) 제3-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,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차감항목의 적용례) 제3-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(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20. ~ 23. (생 략)

제3-14조(차감항목) ①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대출채권(콜론, 환매조건부매수, 대출금, 매입대출채권, 사모사채, 제4-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) 중 담보가액(담보물의 종류,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~ 바. (생 략)

사.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

라.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

19의4. 사회기반시설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.

20. ~ 23. (현행과 같음)

제3-14조(차감항목) ①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 .

-----.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 .

-. 다만, 제3-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자본시장감독국
연 락 처	02-2100-2652	02-3145-7617